

의안번호	제39호
의 결 년 월 일	2026. 4. 22. (제337회)

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6. 4. 10.

#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의안번호	제39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0.  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## 1. 제정이유

- 상위법령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정책실명제 책임관 임무 규정(안 제3조)
-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규정(안 제4조)
-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(안 제5조)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(안 제6조~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, 제63조의2, 제63조의3, 제63조의5
- 기 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771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408)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8502)
  - 입법예고(2026. 2. 27. ~ 2026. 3. 19.) : 제출의견 없음

##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책실명제”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정책수행자”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.
3. “총괄부서”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담당부서”란 정책을 입안·결정·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5. “중점관리 대상사업”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금산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) ①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

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
3.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
4.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4조(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)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.

1. 다수 군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정책
2. 시설공사·전기·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 공사
3. 1억원 이상 용역 사업
4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5.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,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, 결재자, 설계자, 용역연구기관, 시공회사 및 대표, 감리자, 감독 공무원,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.

제5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2.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」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6조(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)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(이하 “사업내역서”라 한다)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) 책임관은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 등에

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내용 중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변동사항 등 관리)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(이하 “사업이력”이라 한다)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책임관은 제출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)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)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11조(정책실명제 평가 등) 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 
규칙」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(제6조제1항 관련)

① 정책사업명			
② 추진배경			
③ 사업개요			
④ 담당부서		⑤ 담당자	과 장 ○○○ 주무관 ○○○
⑥ 선정기준		⑦ 사업기간	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내용 ※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 서명칭 기재	‘00.00.00		○○○ 군수 ○○○ 부군수 ○○○ 국장 ○○○ 과장 ○○○ 팀장 ○○○ 주무관
○ 내용	‘00.00.00		○○○ 과장 ○○○ 팀장 ○○○ 주무관 <관련자> ○○○ 군의원

### <기재항목>

- ① 정책사업명 : 온-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
- ② 추진배경 :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
- ③ 사업개요 : 사업목적,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
- ④ 담당부서 : 소속 기관명, 부서명(과 단위) 기재
- ⑤ 담당자 :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(직위)과 함께 기재
- ⑥ 선정기준 : 군정현안 / 대규모예산 / 연구용역 / 자치법규 / 국민신청 / 기타 中 택1
- ⑦ 사업기간 : 사업의 시작 및 (예상)종료 시점 기재
- ※ <그간 주요 추진내용> :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
- ※ 일시 및 관련자 :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,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



##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11조제2항에 따른 포상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정책실명제 운영의 절차와 공개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,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. 의안에 “포상할 수 있다”는 문구가 있으나, 포상 여부·시기·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추계가 어렵고,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재정효과를 기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- 기획예산과장 박 정 미(☎750-4000)

## 관 계 법 령

###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, 직급 또는 직위, 성명과 그 의견

2.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, 보고서,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, 참석자, 발언내용, 결정사항,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·담당자·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
제63조의2(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
2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

3. 자체 평가 및 교육

4.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**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**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3.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4.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5.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6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**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